



제318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**

**일부개정조례안**

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6. 3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옥외영업 시 음식물 등을 단순가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,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옥외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을 허용하도록 함.(안 별표2 제1호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위생과
- 라. 입법예고 : 2026. 3. 5.(목) ~ 2026. 3. 10.(화)(5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여 음식물의 단순 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옥외영업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옥외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- 현재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 및 가열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, 본 개정을 통해 음식물의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 다만, 규제 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·냄새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·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참고자료

## 타 지자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(단순가열 허용) 현황

○ 전국 지방자치단체 : 60곳 조례 제정

- 단순가열 허용 지자체 : 23개

연번	지자체	자치법규명	옥외영업 허용범위
1	부천시	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 가열 조리행위(굽거나 끓이는 행위)는 허용
2	성남시	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옥외 조리행위는 단순가열 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3	의정부시	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- 이동가능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4	평택시	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만 허용
5	강화군	강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	제5조(시설기준) - 데우거나 즉석가열을 목적으로 이동식 조리 기구의 사용은 가능
6	인천시 남동구	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제2조(정의) - “옥외조리”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
7	인천시 계양구	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8	인천시 중구	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제2조(정의) - “옥외조리”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
9	공주시	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10	괴산군	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제9조(조리행위의 범위) -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허용

연번	지자체	자치법규명	옥외영업 허용범위
11	구미시	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만 가능
12	단양군	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-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13	대구시 군위군	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제6조(조리행위의 범위) -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
14	대구시 수성구	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	(별표3)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- 단순 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허용
15	봉화군	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16	부산시 북구	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 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허용
17	부산시 해운대구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 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허용
18	영암군	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가능
19	음성군	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20	진천군	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가능
21	포항시	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 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허용
22	하동군	하동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행위만 허용
23	홍천군	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	(별표2)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- 단순 가열(굽거나 끓이는 행위)만 허용

**☑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**

제21조(영업의 종류)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~7. 생략.

## 8. 식품접객업

가. 휴게음식점영업: 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. 다만, 편의점, 슈퍼마켓, 휴게소,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(만화가게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에서 컵라면,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나. 일반음식점영업: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
다. 단란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
라. 유흥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
마. 위탁급식영업: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

바. 제과점영업: 주로 빵, 떡, 과자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

**☑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**

제42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(이하 “신고관청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~12. 생략.

13.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제1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자들의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한 조리음식의 단순가열 추가 사항으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가 없음

### 4. 작성자

- 재정경제국 위생과장 김수현